

제332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6. 5. 17 ~ 5. 31)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제 332회 임시회

(2016. 5. 17 ~ 5. 31)

# 목 차

## 제332회 임시회

###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2. 회기 및 운영 .....
3. 의 사 일 정 .....

###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2. 처 리 현 황 .....

###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2. 처 리 현 황 .....
3. 위원회별 처리현황 .....
4. 주요 처리사례 .....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2. 201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

# I . 집회 및 의사일정

##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6. 5. 11(수)
- 집회 일자 : 2016. 5. 17(월) 14:00
- 집회 사유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6. 5. 17. ~ 5. 31(15일간, 2016년 : 48일, 총누계 327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 (연누계 : 14 총 누계 58)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32회 임사회	21	1	3	3	3	2	4	5
2016 년도	65	6	14	10	10	9	11	5
총 누 계	566	40	119	78	88	99	111	31

### 3. 의사일정

####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2016. 4. 18(월) 14:00	<p style="text-align: center;"><b>《 제1차 본회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식</li> <li>○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호근 의원, 강영수 의원, 한완수 의원, 최영일 의원, 이현숙 의원, 정호영 의원, 김현철 의원</li> </ul> </li> <li>1. 긴급현안질문(박재만 의원)</li> <li>2.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li> <li>3.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li> <li>4.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li> <li>5.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li> <li>6. 본회의 휴회의 건</li> </ul>	
2016. 5.31(화) 14:00	<p style="text-align: center;"><b>《 제2차 본회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남주 의원, 김종철 의원, 이해숙 의원, 최인정 의원, 강용구 의원, 최영일 의원</li> </ul> </li> <li>1.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li> <li>2.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li> <li>3.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4.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5.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6.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7.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li> <li>8.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li> <li>9.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0.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li> <li>11.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12.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3.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li> <li>14.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15.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li> <li>16.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li> <li>17.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8.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li> <li>19.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20.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숨리유치원)</li> <li>21.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li> <li>22.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li> <li>23.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운항횟수 증편 촉구 건의안</li> <li>24.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 및 상용화 반대 결의안</li> <li>25. 가슴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및 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li> </ul>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영위원회	5. 17(화) 11: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li> <li>-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li> <li>-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li> </ul> </li>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사무처 소관</li> </ul> </li> </ul>	
행정자치위원회	5. 18(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관리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li> </ul> </li> <li>○ 안전지킴이단 발대식 및 공청회</li> </ul>	
	5. 19(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li> </ul> </li>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행정국 소관</li> </ul> </li> <li>○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li> </ul> </li>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협력국, 공보관 소관</li> </ul> </li>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li> </ul>	
	5. 20(금) 10:3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어울림축제(김제요천), 혁신119안전센터(삼례)</li> </ul> </li> </ul>	
환경복지위원회	5. 17(화) 15: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li> </ul> </li> </ul>	
	5. 18(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복지국 소관</li> </ul> </li> <li>○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li> <li>- 복지여성보건국 소관</li> <li>○ 의안심사</li> <li>-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li> <li>-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li>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li> </ul>	
	5. 19(목)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li> <li>- 새만금 노출부지 및 개발지구 방문</li> </ul>	
산업경제 위원회	5. 18(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li> <li>- 농 축수산식품국 소관</li> <li>○ 의안심사</li> <li>-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li> <li>○ 의안심사</li> <li>-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li>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li> <li>- 경세산업국 소관</li> </ul>	
	5. 19(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li> <li>- 농업기술원 소관</li> <li>○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li> </ul>	
	5. 20(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li> <li>- 어촌체험마을(신시도, 선유도 등)</li> </ul>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5. 18(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li> <li>- 계숙-신덕 국지도 확포장공사 현장</li>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li> <li>- 도민안전실 소관</li> </ul>	
	5. 19(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심사</li> <li>-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통합문화이용권 기획 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li>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li> <li>- 문화체육관광국 소관</li> <li>○ 의안심사</li> <li>-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 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li>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li> <li>- 건설교통국 소관</li> <li>○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li> </ul>	

교 육 위 원 회	5. 18(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li> <li>- 정책질의,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li> </ul>	
	5. 19(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li> <li>- 계수조정</li> <li>○ 조례안 및 의안 심사</li> </ul>	
	5. 24(화)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li> <li>- 장수 단설유치원 개원 현장,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산서중) 등</li> </ul>	
	5.25(수)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안 및 의안 심사</li> </ul>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5. 24(화) 14: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li> <li>- 의회사무처</li> <li>-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li> <li>- 환경녹지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li> </ul>	
	5. 25(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li> <li>- 도민안전실, 소방본부</li> <li>-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li> <li>- 농축수산물국, 농업기술원</li> <li>-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li> <li>- 경제산업국, 대외협력국</li> </ul>	
	5. 26(목)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li> <li>- 정책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국, 직속기관</li> <li>- 교육국, 지역교육지원청</li> </ul>	
	5. 27(금)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심사의결</li> </ul>	
	5. 30(월) 1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보고서 작성(전라북도, 도교육청)</li> </ul>	

## Ⅱ. 의안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32회 (2016. 5. 31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26	15	5	10	1		3		3	4		
	누 계	735	440	184	247	9	8	1	151		25	81	29
의 회	소계	금회	18	13	5	8		1				4	
		누계	385	263	160	103		8	1	5		81	27
	의원	금회	18	13	5	8		1				4	1
		누계	352	263	160	103		7		3		70	9
	위원회	금회											
		누계	33					1	1	2		11	18
도지사	금 회	6	2		2			2		2			
	누 계	251	131	20	105	6			106		13	1	
교육감	금 회	2						1		1			
	누 계	99	46	4	39	3			40		12	1	

## 2. 처리현황

### ○ 총 관

제332회 (2016. 5. 31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26	25	22	3				2	
	누계	735	715	601	97		12		5	20
조례 안	소계	금회	15	14	13	1				1
		누계	440	422	339	78		2		3
	의회	금회	13	12	11	1				1
		누계	263	247	198	46				3
	도지사	금회	2	2	2					
		누계	131	130	101	28		1		
교육감	금회									
	누계	46	45	40	4		1			1
규칙안	금회	1	2	2						
	누계	8	8	8						
규정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3	3	2	1					
	누계	151	149	134	6		8		2	1
일반의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3	2	1	1					1
	누계	25	24	10	12		2			1
건의결의안	금회	4	4	4						
	누계	81	81	80	1					
기타의안	금회									
	누계	29	29	29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23	15	1		3		3	1		23	19	3	1		
	누 계	635	438	8	1	147		25	13	3	615	500	97	13	5	19
운 영 위 원 회	금 회	1		1							2	2				
	누 계	36	25	8	1				2		35	34	1			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 회	5	5			1					6	6				
	누 계	123	99			22			1	1	122	106	15	1		1
환 경 지 복 위 원 회	금 회	4	4								3	3				1
	누 계	98	86			10			2		93	74	15	1	2	5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 회	2	1			1					2	2				
	누 계	91	48			40			3		89	73	9	6		2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금 회	3	2						1		3	2	1			
	누 계	115	76			35			4		111	92	19			4
교 육 위 원 회	금 회	4	3			1					4	3	1			
	누 계	146	104			40		1		1	140	118	17	2	3	6
특 별 위 원 회	금 회	3							3		3	1	1	1		
	누 계	26						24	1	1	26	12	12	2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3						3		3	3				1	
	누계	101	1			5		71	24	100	99	1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26	15	1		3		3	4		25	22	3			2	
	누계	735	440	8	1	151		25	81	29	715	601	97	12	5	20	

#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 기관 및 의안별 <접수>

제332회 (2016. 5. 31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735	440	184	247	9	8	1	151		25	81	29
의 회	소 계	385	263	160	103		8	1	5		81	1
	의 원	352	263	160	103		7		3		70	9
	위 원 회	33					1	1	2		11	18
전라북도지사	251	131	20	105	6			106		13		1
전라북도교육감	99	46	4	39	3			40		12		1

##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32회 (2016. 5. 31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735	715	601	97		12		5	20	
조 례 안	소 계	440	422	339	78		2		3	18
	의 회	263	247	198	46				3	16
	도 지 사	131	130	101	28		1			1
	교 육 감	46	45	40	4		1			1
규 칙 안	8	8	8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151	149	134	6		8		2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25	24	10	12		2			1	
건 의 결 의 안	81	81	80	1						
기 타 의 안	29	29	29							

##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제 출 자	김현철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4.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4.11
	의 결 일 자	2016.5.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전라북도의회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현행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은 1991년 제4대 지방의회 구성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전부개정 이후, 총 27회의 일부개정을 거쳤고, 본 회의규칙에서 대거 22개 조항이 2016. 1. 29 공포·시행된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에 흡수·병합됨.
- 회의규칙이란 지방자치법령과 함께 ‘회의운영’ 과 ‘내부규율’ 을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장전으로서의 ‘법적·사실적 성격’ 을 갖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최소한의 일부개정만으로는 변화된 입법 원칙·기준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리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여러 원칙·기준을 반영하는 등 전부개정이 불가피함.

□ 주요내용

- 가. 총선거후 의회의 최초집회 조항 신설(안 제2조)
  - 의원의 임기 개시일에 사무처장이 미리 소집공고하며, 의회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 나. 조례안 입법예고 조항 신설(안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66조에서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 반영
  - 입법예고 방법, 의견제출시 심사보고에 포함시키고, 해당 조례안 반영 여부에 대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보 등
- 다. 안건 심사기간 기준마련(안 제16조)
  - 상임위원회 등 안건 회부시 심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의장의 투표방법 신설(안 제44조)

- 의장의 투표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의장석에서 투표하여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처직원이 대신하도록 규정 신설

마.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안 제62조)

-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백경태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5.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 이후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 특히, 기획사업은 카드 발급 방식의 이용권사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해주는 보완재 성격의 사업으로서 수혜집단의 호응이 큰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음
-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획사업을 폐지하는 방침으로 전환했음
- 이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이라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은희 의원 외 18인		제 출 일 자	2016.5.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못지않은 문화예술 활동 욕구를 지니고 있음. 특히,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특성 상 실내에서의 정적인 창작활동을 원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오히려 많다고 할 수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보장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권리 보장 및 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식 및 제도적 기반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주요내용

- 가. 제2조(정의) : 관련된 주요 용어의 규정
-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 다. 제4조(시행계획)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라.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요건 규정
- 마. 제6조(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명시
- 바. 제7조(장애인 미술품 구입) : 전라북도 및 도 산하기관의 장애인 미술작품 의무 구매비율 명시

## 전라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에너지 변환·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 출연 (전북테크노파크)  
: 1,842백만원(도비)

###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동 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솜리유치원)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2.2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가칭’ 익산배산초 설립에 따른 유아배치 시설을 확보하고,
- 공공토론위원회에서 수렴한 익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적합한 유아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 익산시 오산면에 ‘가칭’ 솜리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

(단위 : 학급, 명, m<sup>2</sup>, 천원)

지역	학교명 (‘가칭’)	학급수			학생수	설립예정지	개교 예정일	소요 예산액	설립 방법
		일반	특수	합계					
익산	솜리 유치원	9	2	12	195	익산시 오산면 항쟁로 129	2019.3.1	9,108,430	신설

< 수정안 >

(단위 : 학급, 명, m<sup>2</sup>, 천원)

구 분	학교규모		시설규모		병설학급		소요 예산액	설립 방법
	학급수	학생수	교지	교사	특수	유치원		
솜리 유치원	6	146	14,628	3,564	6		9,108,430	신설

###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5. 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5.11
	의 결 일 자	2016.5.29	심 사 결 과	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재심의
이 송 일 자	2016.6.3		이 송 기 관	예결특별위원회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재원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 및 연내 추진이 필요한 재정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2,794,543,387	2,706,227,172	88,316,215
이 전 수 입	2,539,777,877	2,484,650,552	55,127,325
자 체 수 입	32,665,536	28,327,768	4,337,768
차 입	145,880,808	133,170,808	12,710,000
기 타	76,219,166	60,078,044	16,141,122

-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2,794,543,387	2,706,227,172	88,316,215
유아및초중등교육	2,667,848,033	2,570,542,079	97,305,954
평생·직업교육	7,109,895	6,839,131	270,764
교육일반	119,585,459	128,845,962	△9,260,503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12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직위 명칭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구성 및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정비
-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용어 정비와 잘못된 문장 성분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문장 정비

□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직위 명칭 정비
-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구성 및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정비(안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 출 자	최인정·정진세·조병서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행정정보공개 원칙과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정보공개 청구방법과 행정정보의 공표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마. 행정정보 공개방법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기능·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양용모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일부 정당인 및 선출직 정치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등의 직함을 얻고자 지역위원에 출마하는 사례가 많고, 이들 직함을 정치활동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됨
- 특정인이 학교를 옮겨가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을 오랫동안 역임하면서 지역위원의 사익화와 다른 주민들의 지역위원 참여를 가로막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인원을 일부 제한하고, 지역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 이에 지역위원이 2인 이상인 학교의 지역위원 중 정당인이 차지하는 수가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함
- “위원의 퇴직” 조항에서 일부 문구를 어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잘못된 문장을 수정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학교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정비

□ 주요내용

- 가. 가. “정당인” 용어신설(안 제1조2)
- 나. “위원의 선출 등” - 지역위원 정수 중 정당인 수 제한(안 제3조)
- 다. “위원의 임기” - 지역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중임(안 제4조)
- 라. “위원의 퇴직 규정”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7조)
- 마.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바.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 학교 규정에 위임(안 제11조)

###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진호·김대중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5.5.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 추가(안 제4조의1)
- 나.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뿐 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규정 추가(안 제9조)
- 다.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규정 추가(안 제9조의1)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5.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타 지역 인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 道 발전에 폭넓은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출신	주요경력	비고
박인구 (46.11.8.)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장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li> <li>○ 주)동원 F&amp;B 대표이사</li> </ul>	
김경수 (63.2.27)	제35보병 사단장	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본 인사운영처장</li> <li>○ 제7공수여단장</li> </ul>	

###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중철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5.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운영 위탁, 입사 자격 등을 명확한 기준과 현실에 부합하게 보완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된 보호자의 가족에게 주어진 입사신청기회를 1년 이상 등록된 자로 보완하여 선의의 도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개선

□ 주요내용

- 가. 서울장학숙에 본관, 청운관이 있음을 명시(안 제2조)
- 나. 장학숙의 임무에 입사생 선발 및 관리 명시 (안 제3조)
- 다. 자격을 갖춘 기관에 운영 위탁 가능함을 명시(안 제4조)
- 라. 전라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된 보호자의 가족에게 입사 자격 부여(안 제5조)
- 마. 입사생 선발은 각 장학숙 원장이 하도록 함(안 제6조)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허남주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임원의 임기(4년)를 도내 다른 출연기관(2 또는 3년)에 맞춰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안 제7조)

##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허남주송성환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0년 7월 제정되었고, 2014년 이후 몇몇 조문이 일부 개정되어 현재 전라북도 인권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나,
- 전라북도 인권정책 및 도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구체적 책무, 추진체계를 명시하여 현장성과 구체성을 강화시켜 실효적 제도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내지 제2조)
- 나.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의 기본원칙을 명시(안 제3조)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기본적 인권 등을 규정(안 제4조 내지 제6조)
- 다. 전라북도의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을 명시(안 제7조 내지 제13조)
- 라.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심의·자문 기구인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안 제14조 내지 제 19조)
- 마.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추진체계인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20조 내지 제29조)

##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안

제 출 자	강영수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자문하도록 정함(안 제4조)
- 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지원사업, 복지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호윤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시스템과 사업내용에 일치되지 않았던 일부 내용을 실제 업무추진에 맞도록 변경 및 관련법에 맞도록 용어 정비
-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 현행 복지관 운영체계와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립 장애인복지관 내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시설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료 부과에 따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복지관 운영체계의 현실에 맞도록 “이용료” 를 “이용 및 사용료” 로 변경(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나. 현행 국가유공자에게 전액 감면하여 주는 것을 명문화하고, 여성의 모성(임신, 출산, 생리 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가임여성(12~55세)에게 복지수영장 이용료의 10%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1)
- 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전라북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변경(안 제12조)
- 라. 도지사는 매년 복지관 종사자 중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복지관 관련 행사시에 표창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15조)

### 전라북도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취지에 의거 개정 권고 의견을 통보(법무부 인권구조과-591호)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규정 중 “단체” 삭제 (안8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박재만백경태정호영박재완강용구최훈열 국주영은김현철송성환이호근최인정의원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정(2016.1.29.)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인용 조문을 관련조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섭단체 인용 조문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로 변경함

##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 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혁신도시 성과공유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기금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3조)
- 나.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와 자치단체 출연금 등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명시함(안 제4조)
- 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군 시책사업 및 기반시설 등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b>제4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b> 1.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  2.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시·군세 일부 3. ~ 5.(생략)	<b>제4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b> 1. <b>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시·군에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b> 2. <b>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b> 3. ~ 5.(현행과 같음)

###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제 출 자	양성빈 의원 외 15인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1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생활임금 대상(안 제3조)
- 라.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마.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안 제5조 및 제6조)
- 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안 제7조)
- 사.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회 운영 등(안 제8조 ~ 제11조)

##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예결특별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24
	의 결 일 자	2016.5.27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도정 핵심과제 추진과 안전전북 구현, SOC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전북발전을 견인하고자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5,539,299,809	5,526,858,059	12,441,750
일 반 회 계	4,707,824,756	4,695,383,006	12,441,750
특 별 회 계	831,475,053	831,475,053	-
기 타 특 별 회 계	478,650,138	478,650,138	-
농어촌주택사업	12,531,362	12,531,362	-
의료급여기금	398,728,023	398,728,023	-
동 부 권	30,064,186	30,064,186	-
지 역 자 원 시 설	37,326,567	37,326,567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352,824,915	352,824,915	-
지 역 개 발 기 금	352,824,915	352,824,915	-

〈수정안〉

1. 세입예산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사업」 국비 21억원 중 7억원 삭감
2. 세출예산 : 2016년 제1회 추경 5조5,393억원 중 총 10건 11,261,611천원 삭감

##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5.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5.11
	의 결 일 자	2016.5.2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그간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액을 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총괄(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말 조성액(A)	2016년 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변경계획	349,210,707 (319,210,707)	55,753,518 (37,646,646)	87,795,339 (64,688,467)	△32,041,821 (△27,041,821)	317,168,886 (292,168,886)	
당초계획	349,155,571 (319,155,571)	55,641,941 (37,535,069)	59,456,347 (36,349,475)	△3,814,406 (1,185,594)	345,341,165 (320,341,165)	
증 감	55,136 (55,136)	111,577 (111,577)	28,338,992 (28,338,992)	△28,227,415 (△28,227,415)	△ 28,172,279 (△28,172,279)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운항횟수 증편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08년 개설된 군산항과 중국 산둥성 석도항을 연결하는 국제카페리 항로는 중부지역 유일한 대중국 관문으로 해운물류는 물론이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군산-새만금지역은 서해안 최대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한중 정상이 합의하여 ‘한중경제협력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이와 함께 전복이 가진 다양한 관광자원과 전국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른 카페리 항로에 비해 부산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다양한 장점을 보유한 군산항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올해 8월 개최되는 한중해운회담에서 군산항 카페리 운항 횟수 증편이 우선의제로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당 운항횟수를 현행 3항차에서 조속히 6항차 이상으로 증편해야 한다. 한중간 물동량과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 현행 운항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 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8월 열리는 ‘한중해운회담’의 우선의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현재 한중 카페리의 개설과 증설은 한중해운회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다. 정부는 서해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다. 중부권 유일의 대중국 관문인 군산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 및 상용화 반대 결의안

제 출 자	이현숙국주영은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호남평야 한복판에서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 재배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진행 하면서도 전북도민과 농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
- 우리 전북도민과 농민들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더 이상 농진청의 일방적인 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에 대해 묵과할 수 없음.

### □ 주요내용

- 가. 농촌진흥청의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와 상용화를 위한 모든 연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 나. 전국 시험재배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 방지 와 복원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다.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의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및 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5.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5.3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6.1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마련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고 그 사이에 피해가 더 커졌음
-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상 속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함

주요내용

- 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즉각 제정
- 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도입
- 다.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같은 생활 화학제품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6. 1. 1 ~ 2016. 5. 31)

기관별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73	73	0	100	
	누 계		222	222	0	100	
도	금 회		59	59	0	100	
	누 계		184	184	0	100	
교육청	금 회		14	14	0	100	
	누 계		38	38	0	100	

###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6. 1. 1 ~ 2016. 5. 31)

기관별		구 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지	산 업 경 제	문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73	0	17	19	5	8	24	0
	누 계		222	0	46	38	13	45	80	0
도	금 회		59	0	16	18	5	8	12	0
	누 계		184	0	43	35	13	44	49	0
교육청	금 회		14	0	1	1	0	0	12	0
	누 계		38	0	3	3	0	1	31	0

###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4. 7. 1 ~ 2016. 5. 31)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455	1455		
전라북도	1083	1083		
교 육 청	372	372		

###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4. 7. 1 ~ 2016. 5. 31)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1455	0	366	186	144	270	477	12
전라북도	1083	0	333	173	133	251	189	4
교 육 청	372	0	33	13	11	19	288	8

###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6. 5. 31)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5065	0	1537	518	675	765	1412	158
전라북도	4197	0	1450	492	641	692	863	59
교 육 청	868	0	87	26	34	73	549	99